

第144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5日(月)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公聽會開催의件

審査된案件

1.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面
2.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公聽會開催의件..... 10面

(14時45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報告事項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먼저 말씀드리 들 것이 있습니다.

오늘 會議를 通報해 드릴 때에는 앞에 제시한 案件外에 勞動部의 懸案報告가 있었읍니다. 마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미 報道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勞動部長官이 경질이 됐읍니다. 그래서 前任長官의 報告를 듣기도 그렇고 또 新任長官도 就任하기 전에 報告받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勞動部 懸案報告는 빼고 제시한 바 두개 案件만 처리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우리 勞動委員會의 同僚 委員이신 張永喆委員께서 長官으로 入閣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本人 個人은 물론이고 은 우리 勞動委員會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십시오.

○立法調査官 柳盛巖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令培 지금 報告된 請願 2件이 있습니다. 本請願 2件은 이미 구성된 請願審査小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하도록 하겠읍니다.

1.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時49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國政監査結果報告書作成小委員會에서 마련한 報告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小委員長이신 盧武鉉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盧武鉉 盧武鉉委員입니다. 지난번 國政監査를 마친 후에 열렸던 本常委에서 1988年度 國政監査結果報告書 作成에 관한 業務를 小委에서 위임받아서 그동안 檢討한 結果를 오는 報告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案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目次를 보시면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監査의 目的 監査期間 監査實施對象機關 監査實施經過등 5번 監査結果中에서 가. 主要監査實施內容 이 부분까지는 委員님 여러분께서 다 함께 해오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代替했으면 합니다. 覽察하겠읍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이후 是正要求事項에 관해서도 本委員會에서 전부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要求事項中에서 내용을 전부 다 읽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項目만 하나하나 짚어나갔으면 하는데 별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是正要求事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目次

1. 監査의 목적
2. 監査期間
3. 監査實施對象機關
4. 監査實施經過
 - 가. 監査班의 編成
 - 나. 監査日程
5. 監査結果
 - 가. 主要監査實施內容
 - 나. 是正要求事項
 - 다. 政府處理要求事項
 - 라. 建議事項
 - 마. 其他 監査意見
6. 監査結果에 대한 處理意見
7. 其他 特記할 事項

1988年度國政監査結果報告書

憲法 第61條 國會法 第120條와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法律에 의해 勞動委員會가 실시한 下記機關에 대한 國政監査結果를 아래와 같이 報告합니다.

 1. 監査의 目的

憲法 第61條 國會法 第120條 및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國政監査를 實施함으로써 勞動委員會所管事項에 대한 國政運營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立法活動에 반영하고 1987年度 決算 및 1989年度 豫算의 深度있는 審議를 위한 資料 및 情報의 획득을 目的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88.10.5-10.24(20日間)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가. 勞動部 및 地方勞動廳(6) 地方勞動事務所(14) 國立中央職業安定所 國立勞動科學研究所
 - 나.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大邱直轄市 京畿道 慶南道 慶北道 全南道 忠北道
 - 다. 中央勞動委員會 및 地方勞動委員會(7)
 - 라. 韓國產業安全公團
 - 마.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및 地方訓練院(6) 昌原技能大學
 - 바. 勤勞福祉公社 및 地方產災病院(4) 長省 硅肺센터 產業再活院 塵肺研究所
 - 사. 韓國海外開發公社 및 釜山支社
 4. 監査實施經過

가. 監査班의 編成

(1) 中央監査班(서울所在 機關의 監査는 全員參與)

- 監査班長: 金令培(勞動委員會 委員長)
- 監査委員: 張永喆(勞動委員會 委員)
- 監査委員: 金東仁(")
- " 孫柱煥(")
- " 梁慶子(")
- " 李康熙(")
- " 李潤子(")
- " 李台燮(")
- " 韓光玉(")
- " 李相洙(")
- " 李海瓊(")
- " 盧武鉉(")
- " 金在光(")
- " 李仁濟(")
- " 金炳龍(")
- " 金鎔采(")

- 事務補助者: 卓英鎮(專門委員)
- " 宋芳燮(立法審議官)
- " 柳盛薰(立法調查官)
- " 文亨男(")
- " 鄭求福(")
- " 李秀用(行政主事)
- " 洪基杓(速記士)
- " 金載鶴(")
- " 金彩榮(")
- " 鄭蘭(")

(2) 地方1班(慶南 釜山 慶北 大邱 江原 地域)

- 監査班長: 金令培(勞動委員會 委員長)
- 監査委員: 金東仁(勞動委員會 委員)
- " 梁慶子(")
- " 李台燮(")
- " 韓光玉(")
- " 盧武鉉(")
- " 金在光(")
- " 金炳龍(")
- 事務補助者: 卓英鎮(專門委員)
- " 柳盛薰(立法調查官)
- " 文亨男(")
- " 洪基杓(速記士)

事務補助者：金載鶴(速記士)
 (3) 地方2班(全南北 光州 忠南北 京畿
 仁川地域)
 監查班長：張永喆(勞動委員會委員)
 監查委員：孫柱煥(")
 " 李康熙(")
 " 李潤子(")
 " 李相洙(")

監查委員：李海瓚(勞動委員會委員)
 " 李仁濟(")
 " 金鎔采(")
 事務補助者：宋芳燮(立法審議官)
 " 鄭求福(立法調查官)
 " 李秀用(行政主事)
 " 金彩榮(速記士)
 " 鄭蘭(")

4. 監查日程

日 時	對 象 機 關	監 查 場 所	監 查 方 法	備 考
10. 5(水) 10:11-23:52	勞動部	被監查機關	業務現況報告 資料提質疑認 行政策書確	監查委員 全參員與
10. 6(木) 10:13-15:38 16:04-19:38	中央勞動委員會 勤勞福祉公社	" "	" "	" "
10. 7(金) 16:05-22:07	韓國海外開發公社	"	"	"
10.10(月) 10:22-16:44 18:12-19:31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國立中央職業安定所	" "	" "	" "
10.11(火) 10:26-18:58 21:07-01:14	서울地方勞動廳 서울冠岳地方勞動事務所	" "	" "	" "
10.12(水) (第1班) 10:55-15:50 16:25-18:05	馬山地方勞動事務所 慶南地方勞動委員會	" "	" "	第 1 班 "
18:50-19:05 19:43-23:12	昌原技能大學 慶南道廳	" "	" "	" "

4 (第144回-労働第7次)

日 時	對 象 機 關	監 査 場 所	監 査 方 法	備 考
(第 2 班) 11:24-15:04	順天職業訓練院	被 監 査 機 關	業 務 現 況 報 告 出 疑 認 資 料 提 質 確 政 策 書 文	第 2 班
15:38-16:58	順天病院	"		"
18:35-19:52	麗水地方労働事務所	順天病院監査場		"
10.13(木) (第 1 班) 10:48-18:15	釜山地方労働廳	被 監 査 機 關	"	第 1 班
18:58-00:24	釜山直轄市廳	"	"	"
(第 2 班) 10:30-13:50	光州地方労働廳	"	"	第 2 班
15:07-17:22	全南道廳	"	"	"
17:53-18:55	全南地方労働委員會	"	"	"
10:14(金) (第 1 班) 10:46-14:27	蔚山地方労働事務所	"	"	第 1 班
16:00-16:45	蔚山職業訓練院	"	"	"
(第 2 班) 10:44-12:07	裡里職業訓練院	"	"	第 2 班
14:12-16:53	全州地方労働事務所	"	"	"
17:28-18:38	全北地方労働委員會	"	"	"
10.15(土) (第 1 班) 10:31-13:09	浦項地方労働事務所	"	"	第 1 班
14:43-16:11	浦項職業訓練院	"	"	"
(第 2 班) 10:18-13:38	大田地方労働廳	"	"	第 2 班
15:25-16:14	忠南地方労働委員會	"	"	"
10.17(月) (第 1 班)				

日 時	對 象 機 關	監 査 場 所	監 査 方 法	備 考
10:15-18:05	大邱地方労働廳	被 監 査 機 關	業 務 現 況 報 告 資 料 提 出 疑 認 政 策 策 書 質 確	第 1 班
18:32-20:55	慶北道廳	"	"	"
21:24-22:20	大邱直轄市廳	"	"	"
(第 2 班)				
10:17-18:02	清州地方労働事務所	"	"	第 2 班
18:39-19:26	忠北道廳	"	"	"
19:54-20:31	忠北地方労働委員會	"	"	"
10.18(火)				
(第 1 班)				
10:15-12:58	龜尾地方労働事務所	"	"	第 1 班
13:55-14:35	龜尾職業訓練院	"	"	"
(第 2 班)				
10:12-13:22	水原地方労働事務所	"	"	第 2 班
14:34-16:08	京畿道廳	"	"	"
17:40-21:05	安養地方労働事務所	"	"	"
10.19(水)				
(第 1 班)				
13:22-16:00	太白地方労働事務所	"	"	第 1 班
16:50-19:42	長省病院, 長省塵肺센터	"	"	"
(第 2 班)				
10:15-20:23	仁川地方労働廳	"	"	第 2 班
21:47-22:28	仁川地方労働委員會	"	"	"
22:45-23:56	中央病院	"	"	"
10.20(木)				
(第 1 班)				
09:40-12:37	東海病院 塵肺研究所	"	"	第 1 班
14:35-15:54	江陵地方労働事務所	"	"	"
(第 2 班)				
14:18-22:35	城南地方労働事務所	"	"	第 2 班

日 時	對 象 機 關	監 查 場 所	監 查 方 法	備 考
10.21(金)				
10:32-15:15	勤勞福祉公社	國會勞動委員會 會議室	政 策 質 疑 文 書 確 認	監 查 委 員 全 員 參 與
15:33-16:45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	"
17:56-00:48	서울市廳	被 監 查 機 關	業 務 現 況 報 告 資 料 提 出 政 策 質 疑 文 書 確 認	"
10.22(土)				
11:06-12:16	韓國海外開發公社	國會勞動委員會 會議室	政 策 質 疑 文 書 確 認	"
12:34-13:52	韓國產業安全公團	"	"	"
16:55-00:06	勞動部	"	"	"
10.24(月)				
14:38-19:21	勞動部	"	"	"

5. 監查結果

가. 主要監查實施內容

(1) 共通事項

- '87 '88年度 豫算執行確認 및 '89年度 豫算案 審查資料
- '87 '88年度의 主要政策의 推進事項
- '87 '88年度 主要事業의 推進事項
- 機關運營 및 人事管理事項
- 傘下機關·傘下企業體 및 公團의 運營에 관한 事項
- 勞動組合·勞動爭議 및 職業安定과 관련된 事項
- '87 '88年度 각종 民願處理事項
- '87 '88監查院 監查指摘事項

(2) 所管別·事項別 監查事項

- 關係機關 勞動對策會議 運營의 실상
- 勤勞者就業制限名單(블랙리스트)에 의한 勤勞者不當解雇와 對策
- 소위 偽裝閉業 對策
- 救社隊에 대한 認識과 對策
- 소위 偽裝就業者에 대한 事業主의 視覺과 措置事項
- 防衛產業體 指定業體와 勞組活動 制限

問題

- 勤勞監督官의 業務遂行과 問題點
- 大企業體에 대한 精密監督 實施問題
- 產災豫防을 위한 保護具의 檢定問題
- 產業安全·保健擔當者의 充員問題
- 作業環境測定의 內實化
- 男女雇傭平等法의 實效性 提高問題
- 海外就業斡旋業 許可問題
- 各級 勞動委員會의 救濟申請處理와 問題點
- 政府投資機關 및 職業訓練管理公團 등의 軍出身 非專門家 人事問題
- 訓練院生 給食費 引上問題
- 訓練院의 工科 改編 및 定數調整問題
- 產災豫防을 위한 技術開發
- 政府投資機關의 理事長制度 閉止
- 勤勞福祉公社의 經營上 問題
- 勤勞福祉公社의 醫師 및 看護師 등의 充員問題
- 勤勞福祉公社의 福祉事業의 擴大問題
- 長省病院과 硅肺센터의 個別運營上의 問題點
- 勤勞者 健康診斷의 內實化 및 職業病

에 대한 對策

- 勤勞者 賃貸아파트 敷地確保問題 및 業務의 1元化問題
- 海外開發公社의 業務實績不振問題
- 海外開發公社의 海外旅費등 豫算不法支出問題
- 各 市道의 勞組設立申告書 處理에서 야기된 問題點 및 臨時總會 召集權者 指定과 관련된 사항

나. 是正要求事項

(1) 有關機關 協助體制 未洽

地方勞動廳과 地方勞動事務所는 職制上으로는 地方勞動廳이 上位行政廳인데도 業務處理는 地方勞動廳의 指示를 받지 않고 獨立處理함으로써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關聯行政官廳과도 業務上 協助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勞動組合의 設立 및 勞動爭議 發生狀況 등의 把握이 되지 않고 있는 實情입니다.

(2) 소위 僞裝閉業을 한 企業主의 索出

企業主가 勞組의 設立 또는 現行法上 勞動爭議나 紛糾를 피할 目的으로 閉業하는 것은 不當勞動行爲인바 이러한 企業은 철저히 색출하여 企業이 원상회복되도록 迅速하고 強力하게 依法處理하여야 할 것입니다.

(3) 檢察廳등 公安機關에 提出하는 勞動動向報告書問題

地方勞動廳이나 地方勞動事務所에서 勞動部에 提出하는 公式報告 이외에 勞動部의 指示도 받지 않고 檢察廳등 公安機關(安企部·保安司)에 地域勞動動向報告書를 關行적 및 日常的으로 提出하고 있는 勞動動向報告書를 즉시 是正해야 할 것입니다.

(4) 企業主에 대한 勞使教育

大企業體의 勞組設立 및 勞組活動에 대한 杞慮현상 등이 상당하므로 企業主에 대한 원만한 勞使關係定立을 위한 教育이 要求됩니다.

(5) 勤勞者教育

勞動官廳이나 勞動者團體에서 실시하는 教育의 對象과 內容이 일부 勤勞者 幹

部爲主로 되어 있으므로 一般 多數勤勞者를 위한 諸般權利 및 保護部分에 대한 教育이 不實한 實情입니다.

(6) 産業安全 및 保健擔當者 充員

産業安全 및 保健擔當者의 役割이 매우 重要하나 充員을 시키지 않고 있는 企業體가 많은 實情이므로 同 擔當者의 充員이 시급합니다.

(7) 身體檢査 및 作業環境 測定結果 通報

有害物質 製造業體와 有害作業環境業體의 勤勞者에 대한 特殊檢診 및 精密檢診등 身體檢査 結果를 事業主뿐만 아니라 勤勞者本人에게도 通知하고 作業環境 測定時 勤勞者 代表의 參與뿐만 아니라 同 測定結果를 管轄 勞動事務所에 通報함으로써 監督官廳이 點檢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產災豫防保護具

產災豫防을 위한 保護具의 性能合格率이 87年 22.5% 88年 21%로 매우 저조한 實情으로써 不良保護具의 製造·販賣 및 賃與業者에 대한 措置를 強化함이 시급합니다.

(9) 勤勞者 賃貸아파트 建立

勤勞者 賃貸아파트 敷地를 地方自治團體에서 確保하도록 되어있으나 敷地確保가 圓滑치 못하여 賃貸아파트 建立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賃貸아파트 建立에 있어서 敷地造成은 地方自治團體에서 建築費는 國家補助 50% 住宅基金에서 50%로 3元化되고 있는바 賃貸아파트 建立의 活性化를 위해 同業務를 勞動部로 1元化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豫算配定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海外就業斡旋業 許可

海外演藝人就業斡旋業 許可에 있어 施行令에 海外支社 1個所 이상 가진 業體에 許可하기로 되어 있으나 訓令으로 現地協議會로 代替하였는데 이는 違法한 處事입니다.

(11) 勞動委員會의 公正性維持 및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救濟

각급 勞動委員會의 勞使間 權利紛爭에 대한 處理에 있어 判定事件 統計를 보

면 事業主가 不利한 경우에는 취하내지 화해중용을 많이 하여 企業主의 便宜를 많이 도모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公正性을 維持하여 勞動委員會의 信賴性을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勞動委員會에서 不當勞動行爲의 救濟命令을 받은 勞動者의 復職을 이행하지 않는 事業主에 대해서는 勞動部가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12) 訓練院人事

專門性을 결여한 軍出身 人士가 教育機關인 職業訓練院 幹部級에 지나치게 많이 任命되어 있습니다.

(13) 醫師·看護師등 充員

勤勞福祉公社에 現在 醫師 14名 藥務職 11名 醫務職 28名 看護師 84名이 充員되지 못한 상태에서 運營되고 있어 産災患者는 물론 一般 外來患者의 診療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 政府處理要求事項

(1) 關係機關 勞動對策會議 廢止

勞動問題에 대해 勞動部가 아닌 安企部나 保安司 등이 參與하는 關係機關對策會議를 廢止할 것입니다.(國政監査時 指摘된 事項으로 1988.10.14 總理訓令 224 號로 廢止됨)

(2) 勤勞者就業制限名單(블랙리스트)作成 및 配布禁止

블랙리스트에 記載된 勤勞者는 就業되더라도 바로 解雇되거나 解雇의 위험을 받는 實情임. 따라서 이러한 狀況은 勤勞者의 人權侵害 뿐만 아니라 生存權과 直結된 심각한 문제로서 最近 勞動部에서 블랙리스트를 發見즉시 廢棄·燒却을 指示하고 있는 바 完全히 根絶될 수 있도록 措置할 것입니다.

(3) 防衛產業體의 縮小 再調整

現在 71個의 業體가 防衛產業體로 指定되었는바 부분적인 防産物을 生産하는 경우에도 部品事業場 뿐만 아니라 全事業場을 防衛產業體로 一括 指定함은 무리이며 또한 防産業體는 勞動問題에 대해 많은 制限이 加해지는 不利함이 있으므로 純粹 防産物事業場에 局限하여 指定을 縮小 再調整하여야 합니다.

(4) 石炭產業體의 勤勞者問題

石炭產業體中 經濟性이 약한 炭鑛의 廢鑛에 따라 失業·賃金 및 災害補償등의 問題가 豫想되는 바 勞使紛糾豫防과 勤勞者의 轉業問題에 대한 적절한 事前措置가 要望됩니다.

(5) 職業病治療

勤勞者健康診斷이 形式的으로 實施되는 傾向이 있으며 職業病에 대한 早期發見과 治療對策이 未洽함.

특히 塵肺疑症 有所見者에 대한 入院與否를 檢診病院에서 決定 즉시 通知토록 함으로써 신속히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改善해야 할 것입니다.

(6) 海外開發公社의 豫算不法支出件에 대한 引責問題

海外開發公社가 '84년부터 '87年사이에 全數燒 前 새마을會長의 海外出張費와 새마을本部에서 招請한 外國人 招請經費 등 40,969,000원의 不法支出件에 대한 同 公社社長의 引責問題는 勞動部長官이 答辯에서 約束한대로 必히 履行할 것입니다.

라. 建議事項

(1) 勞動事務所 및 勞動委員會의 獨立廳舍問題

9個所의 地方勞動事務所와 13個所의 地方勞動委員會는 現在 협소한 廳舍를 賃借하여 使用하고 있는 바 勞動業務의 원활한 進行을 위해서는 年次計劃을 樹立하여 獨立廳舍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勞動金庫設立 推進問題

勤勞者들이 地域 團體 職種등에 따라 相互連帶한 協同組織을 통해 資金을 造成하고 利用하며 또한 附帶事業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勤勞者들의 金融需要를 자주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勞動金庫의 設立에 대해 政府가 보다 積極적으로 檢討 推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3) 各級 勞動委員會의 自律性提高 및 人員增員

各級 勞動委員會는 雇傭職職員을 包含하여 9-12人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業務量은 6·29宣言以後 대폭 增加된 實

情으로써 業務量이 過重한 狀態임.

또한 職務의 性格上 業務處理의 自律性과 判定의 獨立性이 提高되어야 할 것이므로 機構의 改編과 아울러 職級의 上向調整이 切實합니다.

(4) 勤勞監督官의 業務量調整과 資質向上

勞動部의 勤勞監督官은 '88年10月 現在 1人當 平均 294個 事業體를 管轄하며 勤勞者數로는 12,786名을 擔當하는 實情으로써 勤勞監督官數를 增員하여 業務量을 合理的으로 再配分하지 않고는 業務의 正常的 遂行이 어려운 狀態임. 또한 勞使觀의 새로운 定立 및 資質向上을 圖謀하여야 하며 아울러 職務上 司法權 活用의 實效性을 提高시켜야 할 것입니다.

(5) 産業災害 專擔部署設置

勞動部에 産業災害業務를 總括적으로 專擔할 産業安全局과 같은 專門機構를 設置하여 産災의 縮小에 대한 政策啓發이 시급합니다.

(6) 男女雇傭平等法 施行의 未洽

'88년부터 男女雇傭平等法이 施行되고 있으나 同法에 대한 弘報 및 理解가 不足한 實情임. 法의 實效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努力이 要求됩니다.

(7) 海外開發公社의 改編 또는 廢止

海外開發公社의 主業務인 海外移住 및 海外就業에 대한 實績이 不振하므로 高級技術人力의 海外就業의 促進등 이에 대한 획기적인 對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임. 同公社는 年間 豫算額 42億원을 支出하면서 運營하고 있는데 海外移住 및 海外就業이 同公社의 努力에 의해 이루어진 實績이 별로 없음. 따라서 豫算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同公社의 業務改編 乃至 廢止가 要求됩니다.

(8) 職業訓練基金의 活用

職業訓練基金을 造成하고 있으나 同基金의 적절한 活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9) 豫算編成問題

產特會計에 있어 一般管理費는 一般會

計에서 出捐되어야 하나 現在 產特會計에서 負擔하고 있는 地方勞動官署運營費는 117億3,144萬원이나 되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官署運營經營費등은 一般會計에 編成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訓練院生 食費引上問題

職業訓練院의 訓練院生 給食費를 보면 1食當 339원으로 成長期에 있는 訓練院生에게는 매우 不足한 額數일 뿐만 아니라 교도소재소자의 給食費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므로 이에 대해 政府出捐金을 增額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訓練院의 訓練工科 調整

各 訓練院의 訓練工科 및 各 工科別 訓練院生의 定數를 地域特性과 尖端技術 部門에 맞게 改編 調整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靑少年이 訓練받을 수 있도록 訓練院의 擴大가 要望됩니다.

(12) 訓練院 名稱의 改名

職業訓練管理公團 傘下의 各 訓練院의 名稱을 訓練院生의 사기와 將來 社會의 인 地位向上등을 고려하여 現在 使用하는 名稱보다는 보다 적절한 名稱으로 改名하는 方案으로 檢討가 必要합니다.

(13) 政府投資機關의 理事長制 廢止

政府投資機關은 共히 該當되는 事項으로써 公社의 理事長制度는 公社運營에 屋上屋格으로 豫算만 낭비하는 機構라고 봄으로 勞動部傘下 勤勞福祉公社와 海外開發公社의 理事長制(非常任理事包含)는 廢止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勤勞福祉公社의 經營上問題

勤勞福祉公社는 勤勞者의 福祉向上을 위해 設立된 機關이나 總豫算의 90%인 300億원이 醫療收入으로 充當되고 있으며 國庫補助는 10億餘원에 不遇한 바 福祉公社가 소기의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政府의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經營評價制度의 改善과 함께 國家補助를 增額시키거나 政府出捐機關으로 變更시키는 것이 妥當할 것입니다.

(15) 災害勤勞者의 再活對象

매년 수많은 災害勤勞者가 發生(1987 現在 災害件數 141,495 身體障礙者數 25,244)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施

設이 매우 不足한 實情임. 따라서 이들의 再活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再活院 및 再活作業所 등의 建立에 대한 對策이 要求됩니다.

(16) 各市·道의 勞政業務 役割提高

勞政業務를 道에는 職員 4名 市는 3名 郡은 1名の 職員이 擔當하고 있는 바 急增하고 있는 勞動問題를 現 人員으로는 擔當하기 어려운 實情임. 따라서 昨今の 勞使業務를 萬全히 遂行하고 勞使問題에 대한 正確한 把握을 위하여는 擔當公務員의 增員이 不可避한 實情입니다.

마. 其他 監査意見: 없음.

6. 監査結果에 대한 處理意見: 是正要求事項 政府處理要求事項 및 建議事項과 중복됨으로 省略합니다.

7. 其他 特記할 事項: 없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대개 監査期間동안 지적되었고 문제가 망라되었다고 믿습니다만 혹시 빠진 여부가 있는지 또 보충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이 委員會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小委員會에서 作成한 報告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國政監査의 主要部分과 指摘事項 등을 거의 망라해서 작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려 들 것은 本報告書는 各黨의 幹事會議에서도 1次 檢討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려 듭니다.

이 報告書에 대해서 異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慶子委員 그때 監査 당시에 지적돼 가지고 약속한 것이 이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具體的으로 產業銀行件에서 中勞委에서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建議事項에 추가로 넣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李海環委員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專門委員께 말씀드리는데 15「페이지」12項 보면 그냥 訓練院人事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우리는 아는 표현이지만 '韓國職業訓練院管理公團傘下機關 이렇게 정식 명칭을 달아서 제목을 뽑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가지고 내용이 압축될 수 있도록 적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두 委員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李海環委員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그것이 반영되도록 委員長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梁慶子委員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로 具體的으로 얘기하셔서 어느 곳에 삽입하느냐 하는 것을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넣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梁慶子委員 제 생각으로는 男女雇傭平等法 施行의 미흡점에 편의상 協議해 가지고...

○委員長 金令培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小委員會에서 報告한 내용을 勞動委員會 報告書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公聽會 開催의 條件

(14時54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公聽會 開催의 條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해서는 使用者側이나 勤勞者側을 비롯한 社會 各界로부터 그 改正 方向에 대한 의견들이 百出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勞動委員會에 넘어 온 法案은 平和民主黨에서 제안한 勞動關係法改正案뿐입니다. 앞으로 2·3日 內에 民正黨이나 共和黨도 法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民主黨의 法案은 이미 國會에 제출되어 있는데 本 勞動委員會에는 아직 넘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4黨의 法律案이 다 제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改正案을 모아서 公聽會를 열어 各界의 人士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勞動關係 改正法律案을 審議 處理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公聽會 開催의 條件에 대해서는 지난번 各黨 幹事님들과 協議한 결과 12月10일에

開催하되 意見發表者는 勞動部 韓國經營者總協會 韓國勞總 全國勞動運動團體協議會 學界 등에서 代表 1人씩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午前 幹事會議에서 勞動部를 韓國勞動研究院으로 交替하고 大韓辯護士協會代表 1人을 추가하자는 修正意見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全體會議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合意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 앞에 公聽會計劃書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討議 決定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李康熙委員 저희 民正黨의 입장으로 너무 편중되는 議事進行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時點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議事進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長官님으로 발탁되신 저희 黨 張永喆 幹事님 대신으로 참관해 가지고 그때 油印物 배포된 대로 勞動部 韓國經營者總協會 韓國勞動組合總聯盟 그리고 全國勞動運動團體協議會 그리고 學界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學界 1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임을 하기로 먼저 幹事會議에서 各黨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長官으로 발탁을 받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저는 듣고 전달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은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長官님 발탁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勞動法改正問題라든가 또 公聽會問題를 協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幹事報告를 저희 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黨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먼저번에 결론을 지은 이 다섯 團體에 대해서 이대로 유지해 가지고 公聽會를 하는 것까지는 意見이 討論이 됐는데 야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얘기를 協議하다보니까 지금 與黨의 委員님들이 아시다시피 먼저 양해를 구한대로 우리 黨의 黨職改編問題라든가 또 入閣에 대한 更迭問題 등 여러가지 해가지고 이 자리에 많은 委員들이 참석을 못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은 상당히 저희 黨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다시한번 協議하자는 것을 議事進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대로 지난 번 幹事會議에서

결정난대로 한다면 異議가 없는 것으로 저희 黨內의 議員會議에서 한 결론은 이렇게 報告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다면 公式적인 또 會議을 거쳐가지고 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議事進行으로 建議를 드리면서 委員長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慶子委員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정상 李康熙委員님께서 幹事 대신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형편이겠지만 저희들이 既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異見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學界할 때 한분을 초청할 것이냐 네분을 초청할 것이냐? 네분을 招請 依頼할 경우 各黨에서 한분씩 依頼할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既存 會議內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12月10日이라는 것이 土曜日인데 구태여 날을 잡으면 하루종일 하게 될 豫상을 해 볼때 土曜日이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으로서는 날짜도 10日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勞動部를 빼고 勞動研究院을 넣는다는 가 또는 辯協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黨內 委員들끼리 協議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委員들이 하겠다 못하겠다 同意를 할 수 없으니까 委員長님께서 깊이 배려를 해 주셔서 다시한번 幹事會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全體會議에서 公開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李康熙委員님과 梁慶子委員님께서 幹事會議에서 다시 協議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잠시 停會를 하고 幹事會議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5時 8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續開를 宣布합니다.

방금전에 10日 公聽會開催件에 관련된 公選人選定問題에 있어서 各黨間에 異見이 있는 까닭에 各 4黨의 黨內協議와 또 4黨 政黨間

의 協議時間을 갖게 하기 위해서 來日 午後 1時에 續開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11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梁 慶 子
李 康 熙	張 永 喆	李 相 洙
李 海 瓊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金 鎔 采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鎮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報告事項】

○議案回附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勞動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件 11月25日 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이상 4件 11月29日 回附됨.

韓國勞動研究院法案
 (11月29日 政府提出)
 12月1日 回附됨.

○請願回附

勞動金庫法制定에 관한請願
 (11月30日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35 한 국노동조합총연맹 委員長 박종근으로부터 金炳龍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勤勞者들의 金融需要를 自主的으로 充足시키고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의 기틀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勞動金庫法을 制定해 주기 바람.
2. 勤勞者間의 協同組織을 통해 資金의 造成 및 利用과 이를 위한 附帶事業을 實施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함으로써 勤勞者 相互間이 金融需要를 充足시킴은 물론 福祉社會의 實現과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勞動金庫法의 制定을 바라는 請願임.

社內勤勞福祉基金法制定에 관한請願
 (11月30日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35 한

국노동조합총연맹 委員長 박종근으로부터 柳昇珪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漸增하는 勤勞福祉需要에 積極 對處하고 勤勞福祉의 內實化를 기하며 所得分配의 不滿解消에 寄與하여 勞使關係의 安定을 圖謀코자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을 制定해 주기 바람.
2. 우리나라의 勤勞者는 經濟成長의 主役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왔으나 그동안 深化된 所得分配의 不均衡은 勤勞者의 士氣를 심히 低下시켜 왔으며 國民間의 違和感과 勞使間의 不信感을 累積시켜 自由民主主義의 基礎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勤勞者들이 스스로의 勞動에 대하여 自肯心을 갖도록 하고 勤勞福祉欲求를 充足시킴은 물론 產業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하여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을 制定해 주기 바라는 請願임.
 이상 2件 12月3日 回附됨.